



제417회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확대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054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확대(안 제40조 등)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6. 27.

다. 회 부 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확대(안 제40조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①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EBS 제외) 및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1항제4호의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②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인 KBS에게 재난방송등(재난방송 또는 민방위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외한다)</u> <u>2. 제1항제4호의 방송사업자</u>
④·⑤ (생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⑦ ----- ----- -----

현행	개정안
대상으로 제5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항-----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제7항----- ----- -----.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이하 “법”) 제40조제1항¹⁾은 지상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과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법 제40조의2제1항²⁾은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 방송사로 지정하고 있음.
- 우선, 개정안은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EBS 제외) 및 종편·보도PP에게 재난방송등을 할 때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자는 지상파 29개, 종편 PP 4개, 보도 PP 2개, DMB 1개임.

< 지상파, 종편·보도PP사업자 현황 >

구 분	세 부 내 역	소 계
지상파	KBS, MBC, 16개 지역 MBC, SBS, EBS, 9개 민방(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울산, 강원, 제주)	29개 (TV, 라디오)
	OBS(경인TV)	1개 (TV 단독)
	경인방송(Sunny FM), 기독교, 불교, 평화, 원음, 극동방송,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tbs, tbs-eFM), 국제방송교류재단(제주영어FM), 부산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국악방송, 와이티엔라디오	13개 (라디오 단독)
DMB	YTNDMB	1개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구 분	세부 내역	소 계
종합편성 PP	TV조선, JTBC, 채널A, MBN	4개
보도PP	YTN, 연합뉴스TV	2개
합 계		50개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특히 청각 장애인에 대한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게 재난방송 시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수어재난방송 제공사업자를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 필요가 있고,
재난방송의 한국수어방송 제공 확대를 통해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국정59)³⁾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적극 수용 입장임.
- 다만, 지상파 텔레비전방송(EBS 제외)와 종편·보도PP가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방송협회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⁴⁾이 이미

3) (국정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②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 재난방송의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제공 및 수어 재난방송 확대 등을 통한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

4)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

존재하므로 개정안은 불필요한 중복 입법이고, 현행 고시상 내용5)을 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재고가 필요하며, 재난방송에서 수어통역을 강제하는 것은 재난방송의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임.

-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 KBS는, 현행 방송법 제69조제8항6) 및 방송법 시행령 제52조7)에서 이미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

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재난방송 등의 준칙) ⑦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는 신속하게 방송하여야 한다.
 - 6)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7)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송 프로그램 방송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개정안과 동일·유사한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불필요한 중복 입법이고, 아울러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에서도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는 한국수어 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일·유사한 중복 규제의 신설보다는 해당 서비스 이행을 위한 공적 재원의 지원 정책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임.

- 종합해보면,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재난방송 접근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 수용 입장과 함께 현재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및 고시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입법의 실익이 없다는 한국방송협회 및 KBS의 반대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